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06일

보문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근	김 *근 1995-08-14	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운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11-06